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 김선교·김석기·김형동

정운천 · 김용판 · 황보승희

윤창현 • 이철규 • 이종배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구분을 수목원과 동일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 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국 등 정원 선진국에서는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바 정원의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치유기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여 정원산업 발전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이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정의를 공간 및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1호의2, 제7호 신설).
- 나. 정원의 구분을 조성·운영 주체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다.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제1항 신설).
-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을 위해 정원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토록 함(안 제18조의9제2항).

법률 제 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을 "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정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 · 운영하는 수목원
-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 운영하는 수목원
- 3. 사립수목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 · 운영하는 수목원
-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 운영하는 수목원
-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가정원: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정원조성계획에 따라 국가가 조 성하고 운영하는 정원
- 2. 지방정원: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운영하고,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정원
-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고, 제18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정원
-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 5. 생활밀착형 정원: 제3호 및 제4호의 정원 외에 일반주민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원
- ③ 제2항의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 제18조의3제1항 중 "제4조제2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정원"을 "제4조제2항제 2호에 따른 지방정원"으로 한다.
- 제18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의9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정원산업"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의"로, "창업을 촉진하기"를 "창업지원을"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 9. 정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1의2.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 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 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 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 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간은 제외한다. 신설>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 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 <u>복 및 유지·증진을 위한</u> 활 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생 략) 제3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원</u>은 다음 각 호의 사업 ② <u>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u> 을 수행한다.

- 1. ~ 7. (생 략)
- ③ (생략)
-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 1. 수목원
 -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목원
 - 다. 사립수목원: 법인 단체 | 하는 수목원
 - 라. 학교수목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 로 조성・운영하는 수목 원
 - 2. 정원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

까지의 정원----

- 1. ~ 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 이 구분한다.
-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 성・운영하는 수목원
-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 체가 조성 · 운영하는 수 3. 사립수목원: 법인 · 단체 또 는 개인이 조성 · 운영하는 수목원
-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 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 는 수목원
 -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가정원: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정원조성계획에 따라 국

운영하는 정원

-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이 조성・운영하

 는 정원
-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 <u>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u> <u>원</u>
- 2. 지방정원: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조성·운영하고,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정원
-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고, 제18 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토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정원
-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
 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
 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
 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
 성・운영하는 정원
- 5. 생활밀착형 정원: 제3호 및 제4호의 정원 외에 일반주민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생 략)
 -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6. 주제정원

- <u>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u> <u>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u> 하는 정원
- <u>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u> 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조성하는 정원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u>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u> 조례로 정하는 정원
- ③ 제2항의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_	-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 ⑤ ~ ⑦ (생 략)
-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지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 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 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 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 저 (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수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② ~ ⑤ (생 략)

<u>시·도지사</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u>제4조제2항제1호</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u>제4조제2항제2호에 따</u>
른 지방정원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신 설>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 정원산업의----창업지원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1. ~ 7. (생략)

8. (생략) <신 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의인)(경	원	산업	의		진-	<u>ਨ</u> ੋ	및
	창	업 :	지	원)	1	국	가.	와	지	방기	사치
	<u>단</u>	체-	느	정	원식	산업	진]흥	ロラ] 7	항업
	을	Ž	수진] 하	フ]	위	한	지	원	등	필
	요	한	入	책	을	수학	립 •	. 入	행	하ㅇ	네야
	한 ⁻	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 10. (현행 제8호와 같음)
 - 9. 정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u>3</u>		 	
제1형	<u>}</u>	 	
	,		

<u>4</u>	제3	<u>항</u>	 	 	